

**●법무부공고제2013-171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확대 및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공포됨에 따라(공포 2013. 4. 5., 시행 2014. 4. 6.),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에 기준의 외부감사 대상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도 추가하였음

2) 자산총액 기준 법인 사업자의 수와 전자어음 의무발행과 관련한 법인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설정함

## 나. 전자어음 분할배서 번호부여 방법 규정(안 제8조의3)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할배서된 각각의 어음에 서로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2013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1. 단체명 :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

## 2. 대표자(주민번호) : 주경복(540528-\*\*\*\*\*), 사사키 노리코(500401-\*\*\*\*\*)

## 3. 주된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111

## 4. 주된사업

-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방법 연구 및 개발
-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정보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케어기술 및 치매예방 관련 정책조사, 국제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요양시장 활성화 및 요양시장 환경 개선 등

## 5. 등록연월일 : 2013. 8. 2.